

1. 개정이유

수용자의 처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류 품목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고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수용자 자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 조사·통보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전자장비 녹음·녹화 기록물의 보관 및 파기 절차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자 의류 품목 재편 (안 제4조, 제5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의 종류는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로 열거하였으므로, 내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를 내의류로 수정하도록 함
- 하절기 수용자에게 티셔츠를 지급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하여, 특수복에 티셔츠를 추가하도록 함
- 취사장 등 작업장에서 수용자가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생화를 추가하도록 함
- 이와 같이 의류 품목을 재편함에 따라 의복부속물 용어를 폐지하고 내의류·양말·장갑을 보조복으로 통합하여 수용자 의류 품목·체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

나. 수용자자녀 양육환경 조사 신설 (안 제59조의8)

-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해, 소장은 신입자 수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용자자녀의 경제 상태·양육실태·가족관계 등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의무화 함. 다만, 신입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양육환경 조사 결과 통보 신설 (안 제59조의9)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은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양육환경 조사 결과 및 보호조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라. 수용자자녀 지원 정보 제공 신설 (안 제59조의10)

- 수용자가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에 따른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수용자자녀가 있는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종류·내용·의뢰 절차 등을 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

마. 보호조치 의뢰 지원 신설 (안 제59조의11)

- 수용 중인 신입자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직접 의뢰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소장은 신입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서류 작성 지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서류 전달, 진행 상황 알림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바. 수용자자녀 접견 지원 신설 (안 제59조의12)

- 수용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용자와 자녀 간의 접촉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의 접견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

사.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 지원 신설 (안 제59조의13)

-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가 수용 기간 중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소장은 해당 수용자에게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출소 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용자자녀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신설 (안 제59조의1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무부장관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용자자녀 업무 처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 제59조의15)

-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개인정보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함

차.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정 (안 제90조)

-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현행 월 10회에서 월 15

회로 상향하고, 중경비처우급의 경우 현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월 2회 이내로 허용함으로써 수형자의 외부 소통 기회를 확대함

카. 녹음·녹화 기록물 보존 및 파기 절차 명확화 (안 제168조, 제28조)

- 전자장비로 녹음·녹화한 기록물의 보존 및 파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록물 수집 후 30일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고,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 인쇄물·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파기 방법을 규정함
- 전자장비로 녹음·녹화한 기록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통화 기록물의 경우에도 기록물 수집 후 30일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고,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 인쇄물·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파기 방법을 규정함(안 제168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조복 · 의복부속물”를 “보조복”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전단 중 “운동복 및 반바지”를 운동복 · 반바지 및 티셔츠”로, 후단 중 “운동복 및 반바지”를 “운동복 · 반바지 및 티셔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조복은 위생복 · 장갑 · 조끼 · 비옷 · 내의류 및 양말로 구분하여 6종으로 한다.

6. 신발은 고무신 · 운동화 · 방한화 및 위생화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한다.

제5조제9호 중 “반바지”를 “반바지, 티셔츠”로 “실내운동 또는 운동”을 “실내운동 또는 운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러닝셔츠 · 팬티 · 겨울내의 및 양말”을 “내의류, 양말”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가목 중 “밧”을 “또는”으로, “선택하여”를 “평상 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방한화”를 “방한화, 위생화”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녹음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8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편 제5장 제6절(제59조의8부터 제59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제59조의8(양육환경 조사의 시기·방법 등)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수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용자자녀(법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수용자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입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수용자자녀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수용자자녀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를 위하여 신입자와의 상담, 수용기록

· 집행지휘서· 재판서 등 관련 서류의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양육환경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결과를 수용자의 처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의9(양육환경 조사 결과의 통보) 소장은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9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9조의10(수용자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① 소장은 수용자자녀가 있는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입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종류, 내용 및 의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 제1항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등 제1항의 고지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의11(보호조치 의뢰 지원) 소장은 신입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조치 의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지원
2.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호조치 의뢰 서류 전달
3. 수용자에게 보호조치 의뢰 진행 상황 알림

제59조의12(수용자자녀 접견 지원) 소장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의 접견이 수용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제59조의13(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 지원)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7조의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2. 출소 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제59조의14(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횟수를 늘리거나 조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59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의15(개인정보의 보호) ① 법무부장관 및 소장은 이 절에 따라 수

집·이용·제공되는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용자자녀의 보호 및 지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제59조의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및 소장은 이 절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0조제1항제2호 중 “10회”를 “15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삭제한다.

제1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장은 기록물(이 조에서는 전자장비로 녹음·녹화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기록물을 말한다) 수집 후 30일 경과, 기록물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기록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물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파기할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출력한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제3호나목 및 제8호나목 및 다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5장 제6절(제59조의8부터 제59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0월 0일 이후의 전화통화를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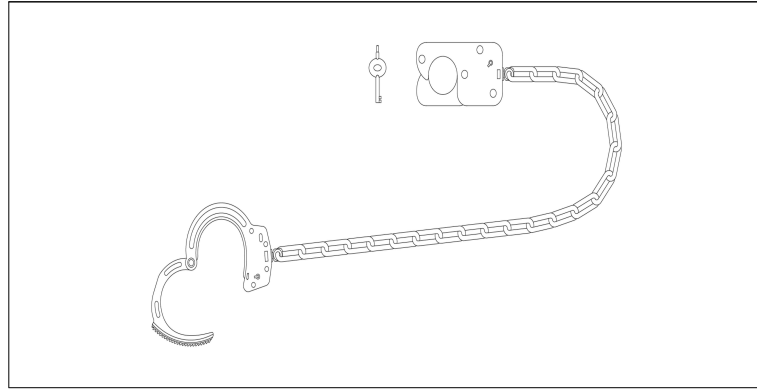
제3조(녹음·녹화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1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녹음·녹화된 기록물 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별표 5]

보호장비의 규격 (제170조 제1항 관련)

1. 수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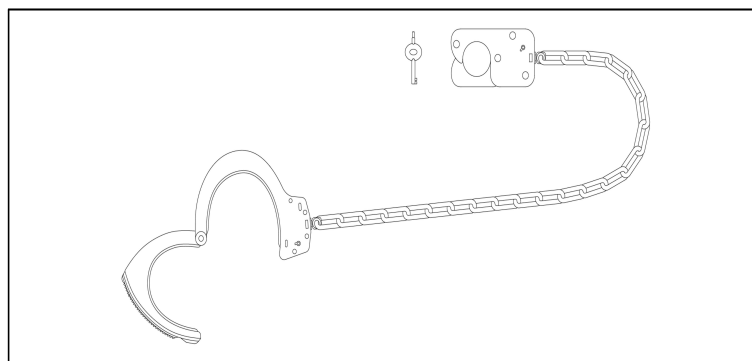
다. 한손수갑



재질	형태	연결고리	최소사용 손목 크기	구성
· 스테인리스스틸 · 알루미늄 합금 · 탄소강	툽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cm 미만의 고리규격	지름: 5cm	· 수갑 1쪽 · 연결고리 · <u>고정용자물쇠</u>

3. 발목보호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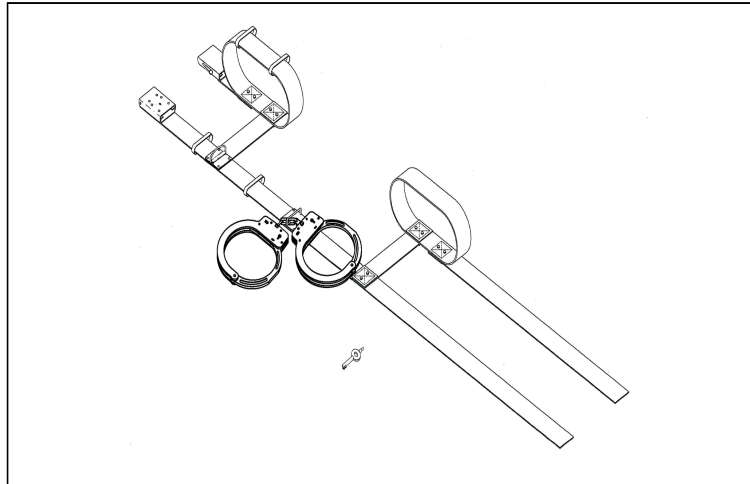
나. 양발목보호장비



재질	잠금장치	연결부위	최소사용 발목 크기	구성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알루미늄 합금	툽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cm 미만의 고리규격	지름: 7cm	· 수갑 1쪽 · 연결고리 · <u>고정용자물쇠</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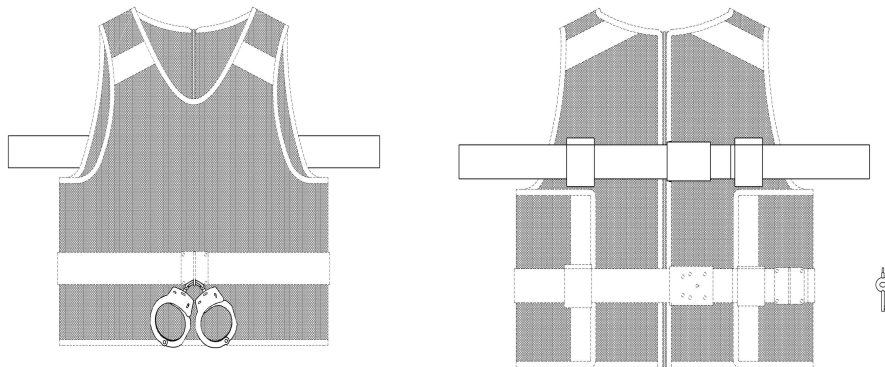
8. 포승

나. 벨트형포승



형태	재질	규격	구성
양쪽 팔과 허리를 고정할 수 있는 타원형	• 벨트: 나일론 • 수갑: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 길이: 160센티미터 • 폭: 4.5센티미터 • 두께: 1.8밀리미터	• 벨트 1개 • 허리 자물통 버클 1개 • 팔 자물통 버클 1개 • 양손 수갑 1개

다. 조끼형포승



형태	재질	규격(가슴둘레)	구성
팔을 앞으로 집어넣고 입힌 후 뒤쪽 지퍼를 잠그는 조끼형	• 조끼: 폴리에스터 • 허리벨트: 나일론 • 팔(결박)벨트: 나일론 • 등 및 허리자물통: 스테인리스 스틸 • 수갑: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 높이: 550밀리미터 ~ 610밀리미터 • 너비: 740밀리미터 ~ 840밀리미터	• 조끼 1개 • 허리벨트 1개 • 팔(결박)벨트 1개 • 등 자물통 1개 • 허리 자물통 1개 • 양손수갑 1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 의 류의 품목은 평상복 · 특수복 · <u>보조복 · 의복부속물 · 모자</u> 및 신발로 한다.	제4조(의류의 품목) ① ----- ----- <u>보조복 · 모자</u> 및 신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복은 모범수형자복 · 외 부통근자복 · 임신부복 · 환자 복 · <u>운동복 및 반바지</u> 로 구분 하고, 그 중 모범수형자복 및 외부통근자복은 겨울옷 · 봄가 을옷 · 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6종으로 하고, 임산부복은 봄가을옷 · 여름옷 을 수형자용과 미결수용자용 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며, 환자복은 겨울옷 · 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고, <u>운동복 및 반바지</u> 는 각 각 1종으로 한다.	2. ----- ----- -- <u>운동복 · 반바지 및 티셔츠</u> ----- ----- ----- ----- ----- ----- ----- -- <u>운동복 · 반바지 및 티셔츠</u> 는 각각 1종으로 한다.
3. 보조복은 위생복 · <u>조끼 및 비옷</u> 으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3. ----- <u>장갑 · 조끼 · 비옷 · 내의류 및 양말</u> 로 구분 하여 6종으로 한다.
4. 의복부속물은 러닝셔츠 · 팬	<삭 제>

티 · 겨울내의 · 장갑 · 양말로
구분하여 5종으로 한다.

5. (생 략)

6. 신발은 고무신 · 운동화 및
방한화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반바지: 수용자가 여름철에
실내생활 또는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10. ~ 12. (생 략)

13. 러닝셔츠 · 팬티 · 겨울내의
및 양말: 모든 수형자 및 소장
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미결수용자가 착용

14. ~ 16. (생 략)

17. 신발

가. 고무신 및 운동화: 수용자
가 선택하여 착용

나. 방한화: 작업을 하는 수용
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착용

5. (현행과 같음)

6. ----- 운동화 · 방한화
및 위생화로 구분하여 4종으
로 한다.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

-----.

1. ~ 8. (현행과 같음)

9. 반바지, 티셔츠: -----
실내생활 또는 운동 등-----

10. ~ 12. (현행과 같음)

13. 내의류, 양말 -----

14. ~ 16. (현행과 같음)

17. --

가. ---- 또는 -----
- 평상 시 ----

나. 방한화, 위생화: -----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녹음)

① (생략)

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녹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8조를 준용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절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제59조의8(양육환경 조사의 시기·

방법 등)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수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용자자녀(법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수용자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입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수용자자녀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수용자자녀 양육실태 및 가
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를 위하여 신입자와의 상담, 수
용기록·집행지휘서·재판서 등
관련 서류의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활
용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
항의 양육환경 조사를 할 수 있
다.
-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환
경 조사 결과를 수용자의 처우
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
여야 한다.
- 제59조의9(양육환경 조사 결과의
통보) 소장은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용자자

<신 설>

<신 설>

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9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
한 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알려야 한다.

제59조의10(수용자자녀 지원에 관
한 정보 제공) ① 소장은 수용
자자녀가 있는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입자
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아동복
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의 종류, 내용 및 의뢰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
다.

②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
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 제1항
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
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
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등 제
1항의 고지사항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
다.

제59조의11(보호조치 의뢰 지원)
소장은 신입자가 「아동복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조치 의뢰에 필요한 서

<신 설>

<신 설>

<신 설>

류의 작성 지원

2.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호조치 의뢰 서류 전달

3. 수용자에게 보호조치 의뢰 진행 상황 알림

제59조의12(수용자자녀 접견 지원) 소장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의 접견이 수용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제59조의13(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 지원)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7조의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2. 출소 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제59조의14(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횟수를 늘리거나 조사 주기를 조

<신 설>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 59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의15(개인정보의 보호) ①

법무부장관 및 소장은 이 절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는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용자자녀의 보호 및 지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제59조의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u>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u> <u>③ 법무부장관 및 소장은 이 절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정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u> <u>④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u>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완화경비처우급: 월 <u>10회</u>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u>15회</u> 이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重)경비처우급: <u>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u> 이내	4. 중(重)경비처우급: 월 <u>2회</u> 이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8조(녹음·녹화 기록물의 관	제168조(녹음·녹화 기록물의 관

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리) ① 소장은 기록물(이 조에 서는 전자장비로 녹음·녹화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기록물을 말한다) 수집 후 30일 경과, 기록물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기록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물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파기할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출력한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